
 논문

노예해방과 시민권*

— 1848년 혁명과 빅토르 쉴세르의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

권 윤 경

- | | |
|----------------------------|------------------|
| I. 서론: 문제제기 및 접근 방법 | IV. 보편적 시민권의 모순 |
| II. 7월왕정기: 쉴세르의 노예제폐지론 | V. 1848년과 해방의 유산 |
| III. '쉴세르 위원회': 혁명적 해방의 기획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프랑스의 '해방자'로 불리는 빅토르 쉴세르의 긴 정치적 이력 중 2월혁명 후 그의 주도 하에 입안된 노예해방령에 대해 살펴본다. 그 핵심은 이행기 없이 노예제를 즉각 폐지하고, 해방노예들과 유색인 주민들에게 참정권을 포함한 완전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식민지를 본국과 동등한 법적, 행정적 체제 하에 통합시키려 한 그의 계획은 이후 식민지 동화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 연구는 노예해방령에 나타난 보편적 시민권의 개념과 실천을 중심으로 쉴세르식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의 모순과 가능성 양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848년의 해방이 남긴 유산을 복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2014254).

I. 서론: 문제제기 및 접근 방법

19세기 프랑스 정치가 중 빅토르 쉴세르(Victor Schoelcher, 1804-1893) 만큼 프랑스 정치의 격랑을 온몸으로 맞으며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는 7월왕정기부터 공화주의자로 활동하다 1848년 2월 혁명 후에는 제2공화정의 급진 산악파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열혈 공화주의자는 1851년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바리케이드 위에 올라 직접 싸운 끝에 제2제정 내내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1870년 귀국한 후에는 제3공화정의 종신 상원의원이자 공화국의 원로로 존경받으며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다. 네 개의 정권을 거치며 평생 프랑스 공화국의 건설과 안정을 위해 싸운 쉴세르는 노예제 폐지, 식민지 개혁, 사형제폐지, 여성과 아동 인권 증진 등의 대의에 평생을 헌신한 인권 정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해방자(Libérateur)’라는 그의 별칭이 말해주듯 이렇게 다양한 이력들 중 핵심적인 것은 식민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쉴세르는 7월왕정기에 프랑스 노예제폐지 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여 2월혁명 직후 단행된 노예해방 과정을 주도했고, 제3공화정기에도 식민지 정치의 중심인물로 남았다. 영국의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나 미국의 링컨(A. Lincoln)과 같은 서구의 여타 ‘해방자들’과 달리 그는 노예제폐지 운동부터 노예해방, 그리고 해방 후 사회 재조직에 이르기까지 해방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필자는 노예제폐지 운동을 연구하면서도 쉴세르를 연구 주제로 잡기를 꺼려왔다. 프랑스 인권운동의 아이콘으로 박제된 쉴세르에 대한 피로감 및 경계심 때문이었다. 이 “프랑스의 윌버포스” 혹은 “프랑스의 링컨”은 오랫동안 프랑스 노예제폐지 운동의 미약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변명 구실을 해 왔다. 그 결과 쉴세르에 대한 저작들은 찬사 일색의 전기에 머물러 있어 연구 자체가 침체되었다.¹⁾ 기

1) 이러한 연구로는 Jules Rouquette, *Les défenseurs de la République, Victor*

역으로서의 쉴세르 신화가 학문적 탐구를 가로막은 셈이다.

1990년대부터 프랑스 노예제와 노예제폐지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쉴세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들이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거의 유일한 쉴세르 전문가인 슈미트(Nelly Schmidt)는 프랑스 노예제폐지 운동과 식민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쉴세르의 역할과 유산을 파악하고자 했다.²⁾ 법제사가인 지롤레(Anne Girollet)는 법적 동화와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쉴세르식 동화주의의 다면적 성격을 포착하고자 했다.³⁾ 영미권에서는 제닝스(Lawrence Jennings)의 연구가 프랑스 노예제폐지 운동 내에서 그의 역할을 균형 있게 살려냈다.⁴⁾ 탈식민주의 쪽에서는 네스비트(Nick Nesbitt)와 토미크(Dale Tomich)가

Schoelcher(Paris: Collombon et Brûlé, 1877); Télesphore Titi, *Victor Schoelcher 1804-1893, Le philanthrope, le patriote, l'homme politique*(Paris: Impr. des Ouvriers Sourds-Muets, 1904); Louis Bougenot, *Victor Schoelcher*(Paris: Editions de la Nouvelle Revue, 1921); Maurice Satineau, *Schoelcher, héros de l'abolition de l'esclavage dans les possessions françaises*(Paris: Mellottée, 1948); Léonard Sainville, *Victor Schoelcher, 1804-1893*(Paris: Fasquelle, 1950); Henri Bangou, *L'actualité du combat et des idées de Victor Schoelcher*(Aurillac: Edition du Centre, 1973); Alain-Philippe Blérald, "La problématique démocratique dans le discours abolitionniste de Victor Schoelcher: essai de philosophie politique",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38, No. 2(1988).

- 2) Nelly Schmidt,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Paris: Fayard, 1994); *Victor Schoelcher en son temps*(Paris: Editions Maisonneuve et Larose, 1998); *Abolitionnistes de l'esclavage et réformateurs des colonies, 1820-1851: analyse et documents*(Paris: Karthala, 2000); "1848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des Caraïbes: ambitions républicaines et ordre colonial,"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Vol. 85(1998).
- 3) Anne Girollet, *Victor Schoelcher, abolitionniste et républicain*(Paris: Karthala, 2000); "L'abolitionnisme de Victor Schoelcher, un humanisme mâtiné de colonialisme et de moralisme", *Cahiers d'Histoire*, Vol. 44, No. 3(1999); "La politique coloniale de la IIe République: un assimilationnisme modéré",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Vol. 85(1998); "Les quatre vieilles colonies: la dialectique de l'assimilation et du principe de la départementalisation chez Victor Schoelcher", Marcel Dorigny (dir.), *Esclavage, résistances et abolitions*(Paris: CTHS, 1999).
- 4) Lawrence Jennings, *French Antislavery: the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in France, 1802-1848*(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당대 자유주의자들과 차별화되는 쉴세르의 급진주의적 해방론에 새로운 관심을 보였다.⁵⁾

그러던 중 필자가 본격적으로 쉴세르에 대해 흥미를 느낀 것은 그가 20세기에 앙티유(Antilles;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출신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서였다. 특히 마르티니크 출신의 시인이자 정치가로서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의 창시자로 유명한 세제르(Aimé Césaire)가 쉴세르에 바친 찬사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⁶⁾ 미국의 제국주의 연구자 와일더(Gary Wilder)는 세제르가 주도한 1946년의 해외도통합안에 “쉴세르의 유령”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평했다.⁷⁾ 비시 정부가 마르티니크를 점령했던 암울한 시절, 그리고 전후 탈식민화의 시대에 왜 세제르는 끝없이 쉴세르를 “다시 읽기(relire)” 했을까?⁸⁾ 식민주의의 폭력과 서구식 보편주의의 함정을 누구보다 소리 높여 비판했던 세제르에게 쉴세르는 무엇이었나? 그가 단지 식민주의 담론에 ‘포섭’당한 것이 아니라면 1848년의 무엇이 이 탈식민주의 정치가를 사로잡았을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쉴세르의 정치적 경력과 유산을 4단계로 나눠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계획했다. 반세기에 걸친 그의 정치적 경력을 한 연구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5) Nick Nesbitt, “On the Political Efficacy of Idealism: Tocqueville, Schoelcher,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Aurelian Craiutu & Jeffrey America (eds.), *America Through European Eyes*(Pennsylvania: PSU Press, 2009); Dale Tomich, “Thinking the “Unthinkable”: Victor Schoelcher and Haiti”, *Review*(Fernand Braudel Center), Vol. 31, No. 3(2008).

6) 세제르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권윤경, 『탈식민화 시대에서 전지구화 시대로: 에메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과 포스트식민주의적 조건들』, 『서양사론』 127호(2015).

7) Gary Wilder, “Untimely Vision: Aimé Césaire, Decolonization, Utopia”, *Public Culture*, Vol. 21, No. 1(2009). 1946년 해외도통합안은 식민지를 프랑스의 도로 통합시켜 본국과 완전한 평등을 이루려는 계획으로서 일종의 앙티유식 탈식민화 전략이었다.

8) 독일 점령기 동안 마르티니크에도 비시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세제르는 자신의 잡지 *Tropiques*에 “Relire Schoelcher”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의 노예제폐지론은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1단계인 7월왕정기 동안 젊은 공화주의자인 쉴세르는 보수적인 왕정 및 식민당파와 싸우며 프랑스 노예제폐지 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했다(2장에 요약 설명).⁹⁾ 2단계인 1848년 2월혁명은 그가 노예해방안을 직접 입안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천에 옮긴 순간이었다. 3단계로 프랑스 제국이 공격적으로 팽창했던 제3공화정기에 쉴세르가 표방하는 노예제폐지론과 동화주의는 이제 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명화 사명’의 이념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 연구는 20세기 이후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그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가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그 중 2단계, 즉 2월혁명 후 쉴세르의 주도 하에 입안된 노예해방령에 대해 살펴본다. 그 핵심은 영국과 같은 이행기 없이 노예제를 즉각 폐지하고 해방노예들과 유색인 주민들에게 본국과 동등한 시민권과 의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특별법 하에 치외법권 지역처럼 통치되던 식민지를 헌법 하에 통합하고자 했으며, 이는 이후 식민지 동화주의(assimilationisme)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1848년은 프랑스 식민주의의 방향이 재설정된 해이기도 했다. 공화국을 선포하고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프랑스는 식민지 체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었다. 노예제가 폐지된 후 식민지 주민들은 공화국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것인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할 공화국에게 식민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쉴세르가 대표하는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고, 동시에 그 모순 역시 함께 배태되었다.

쉴세르가 1848년 입안한 개혁안들을 묶는 열쇳말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citoyenneté’이다.¹⁰⁾ 제2공화국이 공화주의의 역사에 큰 족적

9) 1단계 글은 “A Land of Hope and Despair: Haiti’s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Victor Schoelcher’s Republican Assimilationism(1830-1848)”라는 제목으로 2016년 미국 프랑스사학회에서 발표했다.

10) 혁명기에 나타난 *citoyenneté*는 시민-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총칭하므로 권

을 남긴 것은 무엇보다 보통선거(suffrage universel) 때문이었다. 오늘 날에는 별다른 울림을 자아내지 못하는 시민권,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부로 박제되다시피 한 보편적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도제 수업”이 한창이던 1848년 프랑스, 특히 식민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녔다. 쉴세르에게 노예제의 폐지는 결국 ‘하나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보편적 시민권은 그 견인차가 될 것이었다.

이 연구는 시민권 개념과 그 실천을 중심에 두고 1848년 쉴세르의 기획이 열어놓은 가능성의 공간과 이 때 정식화된 해방의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쉴세르가 시작했던 제2공화국의 급진적 해방의 실험은 단명한 공화국보다 더 빨리 실패했다. 역사가들은 흔히 이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 즉 쉴세르의 이상주의가 현실에 배반당한 것으로 설명하곤 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공화주의와 식민주의 사이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논쟁의 한 축이기도 하다. 과연 공화주의 원칙이 잘못 적용되고 배반당한 것일 뿐 그 이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노예제폐지도 동화주의도 결국 식민지의 유지와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쉴세르 역시 또 하나의 식민주의자에 불과할까?

이 연구는 쉴세르를 이상주의자 아니면 또 하나의 식민주의자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벗어나 1848년의 해방이 남긴 유산을 복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쉴세르의 해방론을 인물 개인의 전기적 관점이나 서구의 지적 계보 내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그의 해방론은 시간과 공간의 다양한 교차점들에서 형성되었고, 또 그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다. 즉, 과거(프랑스혁명기의 1차 해방)와 현재(1848년의 2차 해방), 프랑스의 정책결정자들과 식민지 노예들 사이의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 1848년의 해방을 위치시켜야 한다. 이전 연구들 중 슈미트의 연구는 앙티유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 쉴세르를 위치시

리뿐만 아니라 의무, 시민의 자질과 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citizenship 이 주로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것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시민권’으로 번역하되 필요할 때에는 ‘시민됨’이나 ‘시민성’으로 바꿔 쓰겠다.

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회경제적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추진한 개혁의 법적, 정치적 차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가 없다. 지롤레의 연구는 이 점을 비판하며 법적 동화의 적극적 의미를 탐구했지만 법제사 위주라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슈미트와 지롤레가 수행한 작업의 바탕 위에 해방노예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 탈식민주의적 시각, 그리고 세제르의 쉴세르론(論)을 결합시켜 1848년 해방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1848년 노예해방 이후 앙티유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를 모두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쉴세르 위원회’로 불리던 1848년 노예제폐지 위원회의 활동과 시민권의 의미에 집중하겠다. 다음의 2장에서는 1848년 전야까지 쉴세르의 노예제폐지론을 형성한 요소들을 개관하고, 3장에서는 노예제폐지 위원회에서 벌어진 논쟁을 통해 그가 입안한 해방안의 핵심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쉴세르의 보편적 시민권개념이 표출한 모순을 규명한 후,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세제르의 쉴세르론을 빌려 1848년의 유산을 살펴보며 끝맺고자 한다.

II. 7월왕정기: 쉴세르의 노예제폐지론

알자스 계의 부유한 도자기 제조업자였던 아버지와 상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쉴세르는 당대의 전형적인 부르주아 청년이었다. 가문의 재산 덕분에 그는 살롱이나 프리메이슨 협회를 드나들며 젊은 날을 보냈다. 그가 프랑스 노예제폐지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830년대 초반 공화주의 계열 잡지에 노예제를 비판하는 글들을 기고하면서였다. 1837년에는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 노예제폐지운동 단체였던 ‘프랑스노예제폐지협회(Société française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이하 SFAE)’가 그레구아르 신부(Abbé Henri Grégoire)의 유지를 계승하여 개최한 논문 대회에서 수상하며 노예제폐지 운동에 정식 입문했다. 혁명기 ‘흑인우애협회(Société des amis des noirs)’ 회원이었던 그레구아르 신부는 쉴세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이를 두고 몇몇 연구자들은 쉴세르가 당대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노예제폐지에 대해 급진적 입장을 취했던 것은 그가 그레구아르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적 이상주의와 보편주의를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¹⁾ 그러나 그는 결코 추상적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견해는 실제 식민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가 노예제폐지를 일생의 사명으로 삼은 것은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1828년 미국과 쿠바를 여행한 다음이었다. 주로 정계의 엘리트로 구성되었던 당시 프랑스 노예제폐지론자들 대부분은 식민지를 본 적도 없었던 데 반해, 쉴세르는 자료 수집을 위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헤집고 다니는 정력적인 여행가였다. 그의 저작들은 대부분 이러한 여행의 산물이었으며, 그의 식민지 개혁론은 식민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에 기초한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식민지의 역사에도 해박했다. 두 가지 혁명 전통이 그의 노예제폐지론의 근간을 이루었다. 하나는 프랑스혁명의 전통이었다. 대혁명은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식민지였던 생도맹그(Saint-Domingue)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과 혁명전쟁의 여파로 1794년 노예제를 폐지하고 유색인들에게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방의 전통을 세웠다. 이어 1795년 헌법은 최초로 “식민지는 본국의 일부”로 헌법의 지배하에 놓일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동화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쉴세르는 19세기 전반 내내 자코뱅 급진주의와 ‘혁명적 과잉’의 상징으로 폄훼되던 노예해방령 및 식민지 동화 정책을 공화주의적 노예제폐지론의 의제에 결합시켰다.

그의 노예제폐지론을 형성한 또 하나의 요소는 아이티혁명의 유산이었다.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프랑스 식민지들은 곧 노예제로 복귀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나폴레옹군을 격퇴한 생도맹그만이 1804년 아이티(Haiti)로 독립하여 자유를 지켜냈다. 이후 식민당파는

11) 대표적으로 Nesbitt, “On the Political Efficacy of Idealism”와 Tomich, “Thinking the “Unthinkable””.

선부른 노예해방은 식민지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흑인은 노예제 없이는 노동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기 위해 걸핏하면 아이티혁명을 들먹였다. 이에 반박하는 것이 노예제폐지론자들의 중심 과제였다.¹²⁾ 그러나 쉴세르는 자유주의자들처럼 아이티혁명을 ‘변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리어 생도맹그의 봉기가 노예해방을 일궈냈다고 찬양했다. 그가 보기에 흑인들은 폭력으로 압제에 항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인간성을 증명하고 진정한 공화주의자가 된 것이었다.

또한 쉴세르는 1804년 독립 이후 아이티를 직접 방문한 유일한 프랑스 노예제폐지론자였다. 아이티 여행 후 그가 출간한 책은 이후 아이티 문제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전거가 되었다.¹³⁾ 그는 아이티혁명을 찬양하는 만큼 열성적으로 몰라토 엘리트들이 이끌던 당시의 아이티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아이티가 해방 후 ‘아프리카’가 되었다는 식민당파의 선전에 말려들기 싫어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했던 반면, 그는 독립 이후 아이티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이티가 쇠락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쉴세르의 진단은 이후 그의 해방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탐구 끝에 그가 도달한 결론은 노예제의 완전한, 즉각적 폐지였다. 그는 프랑스 노예제폐지론자 가운데 가장 빠르게 1833년부터 ‘즉시주의(immédiatisme)’를 표방했다. 7월혁명과 1833년 영국의 노예제폐지가 불러일으킨 기대가 무색하게도 노예제폐지 문제는 7월왕정 내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7월왕정기에 식민지의 노예소유주들과 프랑스 항구도시의 상인들을 주축으로 한 식민당파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제 노예제폐지의 원칙은 인정하되 노예들이 ‘준비’될 때까지 해방의 시점을 끝없이 뒤로 늦추는 것이다. 이들이 매수한 언론사와 의원들의 활약, 정부의 현상유지 정책, 그리

12) 이상에 대해서는 권윤경,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 개혁론』, 『프랑스사연구』 28집(2013) 참조.

13) Victor Schoelcher, *Colonies étrangères et Haïti, résultats de l'émancipation Anglaise*, 2 tomes(Paris: Pagnerre, 1842-45).

고 SFAE를 비롯한 온건파 노예제폐지 운동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노예제 문제는 점진적 개혁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쉴세르는 이러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노예제를 폐지해야 식민지를 구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생도맹그의 비극”을 들먹이는 식민당파를 향해 그는 폭력은 해방이 아니라 노예제로부터 온 것이며, 봉기와 반란은 노예제 사회의 자연적 귀결이라고 강변했다.¹⁴⁾ 그는 식민당파가 수십 년 간 이용한 전략을 거꾸로 뒤집어 오히려 “제 2의 생도맹그”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들을 위협했다. 이에 더해 쉴세르는 노예제에 대한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 점진적 해방을 통해 자유와 경제적 필요성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어구-“원칙을 버리느니 차라리 식민지가 망하는 것이 낫다!”¹⁵⁾-를 서슴없이 외쳤다.

이 대원칙은 프랑스혁명과 제1공화국의 것이었다. 그는 공화국이야말로 유일한 보편적 정치체이자 진정한 사회개혁이 가능한 체제라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노예제는 군주제와 제국의 유산으로서 공화국과는 공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미권 노예제폐지론과 달리 쉴세르는 노예제폐지론, 반인종주의, 식민지개혁론을 박애주의나 종교의 건지가 아니라 공화주의라는 세속주의적 정치 기획으로 묶어냈다. 해방은 기독교적 자선이 아니라 공화국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문제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혁명기의 1차 해방과 1848년의 2차 해방을 연결하는 공화주의적 해방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노예소유주들과 결탁한 7월왕정이 노예제를 기어이 폐지하지 않겠다면 혁명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서라도 공화국이 재건되어야만 했다.

1845년, 자유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한 주류 노예제폐지 운동의 힘은

14) Victor Schoelcher, *Des Colonies Françaises: abolition immédiate de l'esclavage* (Paris: Pagnerre, 1842), p. 375.

15) “Périssent les colonies plutôt qu'un principe!” 로베스피에르가 실제로 한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의회에서 절정에 올랐다. 그러나 모두가 기대한 식민지 개혁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어정쩡한 막코 법(lois Mackau)으로 끝났다.¹⁶⁾ 프랑스 식민지에는 여전히 25만 명을 헤아리는 노예들이 있었고, 2월혁명 전야까지 노예해방은 요원해 보였다.¹⁷⁾

III. ‘쉴세르 위원회’: 혁명적 해방의 기획

1847년 겨울 쉴세르는 세네갈을 비롯한 아프리카 식민지로 자료 수집을 위해 또 다시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2월혁명의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오른 그는 3월 3일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임시정부의 해군식민부 장관(minist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이던 아라고(François Arago)를 방문했다. 이때 아라고는 이미 식민지 대리인단(délégués)을 접견한 후 노예해방 문제를 선거 후 제헌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지령을 내린 후였다.¹⁸⁾ 해방은 또 다른 생도맹그를 낳을 것이라는 이들의 협박에 대해 쉴세르는 즉각 해방을 선언하지 않으면 노예들이 봉기하여 제2의 아이티혁명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¹⁹⁾ 예전부터 쉴세르와 친분이 있었고 노예해방의 대의에도 공감하던 아라고는 그를 해군식민부 정무차관 겸 노예제폐지위원회(Commission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이하 위원회)의

16) 당시 해군식민부 장관이던 마코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노예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주인들의 잔혹한 처벌을 금지하며, 노예들이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사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식민지 농장주들의 저항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17) 1848년 해방된 노예들의 수는 자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략 25만-28만 명 사이로 보인다. 해방 당시 주요 식민지의 노예 인구는 1846년 통계로 과들루프 89,349명(1849년 추산 총 인구 128,472명), 마르티니크 75,339명(121,478명), 기안 13,275명(18,079명), 레위니옹 62,151명(118,165명)로 추산된다. Oruno Lara, *Suffrage universel et colonisation*(Paris: L'Harmattan, 2015), p. 55.

18) 식민지 대리인단은 본국에서 식민지 농장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이었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보낸 보조금을 이용하여 본국 언론과 의원들을 매수하고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19) Schmidt,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p. 103-104.

의장으로 임명하여 노예해방 문제를 심의하게 했다. 위원회가 출범한 3월 5일부터 7월까지 그는 노예해방령 작성 과정을 주도했다.

3월 6일부터 모인 위원회는 7월왕정 하의 위원회들과 달리 혁명이라는 상황 덕분에 식민당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쉴세르를 필두로 메스트로(Mestro; 해군식민부 국장), 페리농(Perrinon; 해군 장교, 유색인 자유민), 가틴(Gatine; 변호사, SFAE 회원), 고몽(Gaumont; 식민지 출신 시계장인), 그리고 서기인 발롱(Wallon; 대학 교수, 역사가)과 페르생(Percin; 시인, 유색인 자유민)으로 구성되었다.²⁰⁾ 이들은 식민지 대리인단과 영국 측으로부터 프랑스 식민지의 현 상황과 영국 노예해방의 결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전반에는 지난 혁명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노예해방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동시에 또 다른 아이티혁명을 피하는 길이어야 했다.

위원회의 안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 바로 즉각적인 노예해방령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구성될 제헌의회로 공을 넘길 것인가? 둘째, 해방노예들에게 참정권을 포함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 셋째, 노예제폐지 후 어떻게 노동을 조직하여 식민지 경제를 부양할 것인가? 넷째, 노예소유주들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²¹⁾ 위원회 결성 직후부터 식민지와 항구도시의 대리인단, 정부 관료들, 흑인과 유색인 대표단, 노예제폐지론자들 등 다양한 집단들이 위원회를 방문하는 한편 장외에서 치열한 언론전을 벌였다. 항구도시들로부터는 탄원서와 대표들이 매일 끝없이 도착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즉각 노예해방령을 선포할 것인가,

20) 위원회 회의 내용은 위원회 의사록인 *Abolition de l'esclavage: procès-verbaux, rapports et projets de décret de la commission instituée pour préparer l'acte d'abolition immédiate de l'esclavage*(Paris: Imp. Nat., 1848)으로 재구성했음. 이하 PV로 표기. 위원회 명단은 PV, p. 2.

21) 네 번째 보상금 문제는 해방 조치들과 별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크게 상관이 없기에 생략하겠다.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거나 안전 자체를 제헌의회로 넘기느냐 하는 것이었다. 설세르는 자유와 노예제 사이에 ‘중간’이란 없기 때문에 영국 식의 ‘도제체제(Apprenticeship)’²²⁾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에게 설득당한 후에도 위원회 내에서는 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노예해방이 여름의 사탕수수 수확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해방령 선포와 실제 해방 사이에 두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즉각 해방의 원칙이 결정된 다음에도 이에 대한 반대는 계속 이어졌다. 식민지 대리인단과 항구도시의 상인들은 3-4월 내내 해방령을 제헌의회로 넘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참다못한 설세르는 노예해방은 완수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이 가증스러운 체제를 유지시켜 온 식민당파의 탓이라고 선언했다.²³⁾

한 달 간의 심의가 끝나고 위원회는 “노예제폐지는 법제화되었으며, 그것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²⁴⁾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설세르는 즉각적 노예제 폐지를 좀 더 강조하고자 했다. 그에게 “노예제폐지는 급진적”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단지 원칙의 힘에 복종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국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었던 이 도제체제라는 중간 단계를 밟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흑인들은 이를 가장된 노예제로밖에 안 볼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언제나 자유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화국은 노예들에게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다시 앗아갈 수는 없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도 거짓의 시대는 지나갔

22) 1833년 영국의 노예제폐지 법령은 일종의 이행기로서 1840년까지 두 단계에 걸친 ‘도제 기간’을 설정해서 해방노예들을 대농장에 묶어두고자 했다. 그러나 해방노예들이 강하게 저항한 끝에 도제 체제는 1838년 사실상 폐지되었다.

23) PV, p. 59.

24) “Rapport fait au ministre de la Marine et Colonies par la commission institué pour préparer l’acte d’abolition immédiate de l’esclavage”, Victor Schoelcher, *Esclavage et colonisation* (Paris: PUF, 2007[1948])에 재록, p. 141.

으므로.”²⁵⁾

마찬가지로 그는 해방은 전면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아무리 노예제를 연장시키고, 보수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해도 항상 자유에는 단번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어떠한 수단을 쓰던지 그것은 항상 노예제를 유지시키려는 수작일 것이므로....자유가 한번 주어지면 더 이상 이를 침해할 수 없다. 해방노예들에게 억압이 가해지면 그들은 봉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자신들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여길 것이므로.”²⁶⁾

여기서 보듯이 그가 노예제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 것은 단지 인류애의 원칙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 동안 쌓인 저항의 역사를 보건대 식민지의 노예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새로운 공화정의 등장이 1차 해방의 기억을 활성화시킬 것임도 예상했다. 노예해방령이 성급했다는 비난에 대해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노예해방을 늦추는 것이 노예해방을 실행하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위험했다. 여기서 나를 이끄는 것은 사상가의 열정보다는 사실, 사람, 사물들에 대한 경험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했을 때 자유란 마치 증기처럼 끝없이 팽창하는 힘으로 이에 저항하는 것들을 뒤집고 산산조각 낸다.”²⁷⁾

그에 따르면 1830년 혁명 때 노예들의 기대는 이미 비등점에 올랐는데 한 번 더 해방을 늦추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를 볼 때 쉴세르의 결정은 간접적으로나마 노예들의 오랜 저항의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⁸⁾

25) PV, p. 193.

26) PV, p. 194.

27) Victor Schoelcher, *La vérité aux ouvriers et aux cultivateurs de La Martinique* (1849), *Esclavage et colonisation*에 재록, p. 156.

28) 비슷한 분석에 대해서는 Laurent Dubois, “The Road to 1848: Interpreting

가장 격심한 반대에 부딪친 것은 두 번째 안건, 즉 ‘신(新)시민들(nouveaux citoyens; 해방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쉴세르는 당장 닥칠 제헌의회 선거부터 즉각 신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들이 이에 반대했다. 식민지 대리인단은 “권리를 쓸 줄 모르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Pécoul), “검둥이들은 덩치 큰 아이와 같아서 의무와 마찬가지로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Froidefond-Desfarges)고 주장했다. 유색인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조차 흑인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을지, 백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은 문해력, 결혼 여부, 식민지 거주 이력 등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쉴세르는 지적 능력은 피부색과 상관없으며, 본국이나 식민지나 보통선거 적용에 따르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본국의 농민들이 투표할 수 있다면 신시민들은 왜 안 된다는 말인가?²⁹⁾

쉴세르와 가장 심하게 갈등을 빚은 이는 위원회를 방문한 이장베르(François-André Isambert)였다. 변호사이자 하원의원이었던 이장베르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서 혁명 전까지 프랑스 노예제폐지운동의 지도자였다. 한 때는 아이티 공화국의 비공식 대변인이기도 했다.³⁰⁾ 노동, 금융, 거주 등에 관해 별 이견 없이 이어지던 위원회와 이장베르의 대화는 참정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신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전이 오고갔다.

이장베르: 과도한 급진주의는 프랑스 식민지에 해롭다. 흑인종에게 본국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지성이 실제 발전한 정도를 넘어서는 시민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쉴세르: 이장베르는 식민지에 보통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흑인들에게 투표의 자유를 주는 것은 거부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French Anti-Slavery”, *Slavery and Abolition*, Vol. 22, No. 3(2001), pp. 156-157.

29) PV, p. 62.

30) 이장베르에 관해서는 권윤경,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유산」 참조.

없다.

이장베르: 해방노예들은 정치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을 프랑스인들과 동화시킬 수는 없다. 그들이 백인이나 몰라토를 배제하거나 머릿수를 빌미로 식민지 통치권을 탈취할까 두렵지 않은가? 아이티의 예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쉴세르: 아이티의 무정부 상태는 흑인과 몰라토 사이의 경쟁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다.

이장베르: 아이티의 몰라토가 권력 지향적이라는 점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더 문명화되었고 따라서 흑인들보다 통치에 더 적합하다.

쉴세르: 영국 식민지에서도 거의 보통선거 방식으로 투표한 적이 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프랑스혁명 때 프랑스인들도 오랫동안의 예속 후에 국민의회에 엘리트 대표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장베르: 그 때 투표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친 간접투표였다. 흑인들 중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³¹⁾

결국 위원회는 쉴세르의 뜻을 받아들여 노예해방과 함께 식민지에 의회 대표권을 주고 보통선거에 따른 선거를 즉시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보통선거를 고집한 것일까? 우선 그는 시민권은 보편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어떠한 자격으로 재단하여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예해방령에서 자유와 시민권에 대한 단 하나의 예외 조항만 인정했다. 즉, 노예 소유는 프랑스 시민권과 양립할 수 없으며, 향후 어디에서건 노예 매매에 참여하면 프랑스 시민권을 상실할 것이다(8조). 나중에 그는 신시민의 참정권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권리를 가지고 흥정을 할 수는 없었고, 그들을 절반 시민이나 ¼시민, 즉 2월 혁명이 영광스럽게 창건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자리도 지위도 특징도 가지지 못할 정치적 헤르마프로디토스로 만들 수도 없었다.”³²⁾

31) PV, pp. 72-73. 위의 내용은 축약 정리본.

32) Schoelcher, *Esclavage et colonisation*, p. 175.

무엇보다 쉴세르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령이 발휘하게 될 도덕적 효과”였다.³³⁾ 이장베르와 같은 반대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지적인 투표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어 말한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백인들처럼 흑인들 역시 바로 그 보통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 생활은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다.”³⁴⁾

시민이 되기 위해 정치적 견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시민을 만든다는 사실은 프랑스인들이 혁명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지 않았던가?³⁵⁾ 나중에 식민지에서 선거 유세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요를 두고 사람들은 쉴세르가 성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고 대답했다.

“이 모든 난맥상, 출판물, 토론들, 즉 불과 18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의 두터운 어둠 속에 빠져 있던 흑인 투표자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그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속하게 시민 생활에 입문시키지 않았나?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성을 갈고 닦기 위한 드넓은 장을 제공해 주고, 생각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수없이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어, 결국 그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나?”³⁶⁾

그에 따르면 어제의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더 좋은 방도는 없다; “여기에 해방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덕적 힘 중 하나가 있다; 여

33) PV, p. 35.

34) Schoelcher, *Esclavage et colonisation*, p. 177.

35) 이는 쉴세르가 계속 강조한 것인데, 혁명기 선거에 대한 연구들 역시 시민을 만든 것은 선거라고 말한다. Virginie Martin, “La citoyenneté revisitée: bilans et perspectives historiographiques”,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9(2015), pp. 6-9 참조.

36) Schoelcher, *Esclavage et colonisation*, p. 180.

기에 카스트와 피부색에 입각한 오만의 탑을 전복시킬 가장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가 있다.”³⁷⁾ 즉, 쉴세르에게 참정권이란 단지 법적 동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바탕이었다. 정치적 참여야말로 노예를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최상의 도덕적 교육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통선거는 쉴세르가 주창한 식민지 동화주의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다. 쉴세르의 동화주의는 ‘하나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었다. 쉴세르는 7월왕정 때부터 식민지는 본국과 동일한 법에 의거하여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48년 해방령은 식민지의 보통선거와 의회 대표권을 통해 동화주의 전통의 막을 올렸다. 쉴세르는 이로써 식민지가 본토의 도(道)와 같은 지위가 되었다고 가정했다; “오랫동안 대물림된 추악한 유산인 이 예속 지위를 없애면서 식민지는 보통법을 부여받아 해외도(département d’outre-mer)가 되었으므로, 공화국을 없애지 않고서야 이들로부터 보통선거권을 합당하게 박탈할 방법은 없었다.”³⁸⁾ 신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차별을 승인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며 식민지의 통합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농장주들의 과두제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혁명 후 쉴세르는 과두제 지배의 근간이었던 식민지 참사회(conseils coloniaux)를 즉각 폐지하여 해방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공화국 위원이 해방 과정을 일괄 주도해야 하며, 이후 식민지에 본국과 똑같은 지방 행정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민지의 법제 또한 본국과 같이 개편해서 자의적 법 집행 관례를 없애고 신시민들을 배심원으로 평등하게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세 번째 안전인 노동 조직화 문제는 모든 당파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때까지 노예해방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노예제폐지 이후 흑인들의 노동 거부와 유랑으로 설탕 대농장에 기초한 식민지 경제가

37) *Ibid.*

38) *Ibid.*, p. 176.

와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과들루프 식민지 대리인단이 제출한 계획안이었다. 그들은 노예제 폐지 후 전 주인과 노예 사이에 강제 노동계약(association obligatoire)을 맺어 노동을 재조직하고, 유랑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민지와 항구도시의 대리인단은 모두 흑인은 본성상 게으르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노동을 강제해야 대농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낭트의 대리인 윌리엄스(Williams)는 쉴세르와 설전을 벌이면서 “흑인에게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⁹⁾ 강제 노동계약은 농노제라는 쉴세르의 반박에 대해 그는 흑인은 농노는 아니지만 ‘미성년’이라고 못 박았다. 심지어 자신들이 그토록 비웃고 증오하던 아이티의 농촌법전(Code rural)을 빌려오자고 제안한 농장주도 있었다.⁴⁰⁾

쉴세르는 노동은 시민의 의무이며 시민됨의 핵심 내용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강제 노동계약은 곧 또 다른 노예제이며, 개인의 자발성에 의한 노동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역설했다. 공화국이 어떻게 한 손으로는 자유롭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강제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쉴세르는 블랑(Louis Blanc)을 비롯한 유포피아 사회주의자들과 친분이 깊었으며, 그들의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에 대한 이상을 공유했다. 노예해방 후 식민지 경제의 향방에 대한 쉴세르의 구상은 대규모 자본과 시설이 필요한 정제 작업은 중앙 공장에서 하되, 사탕수수 경작은 소규모 농장들로 다각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식민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경작자들(cultivateurs; 해방노예들을 가리키는 표현)’에게 분배하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설을 확충하여 소규모 경작자들을 육성하고자 했다.

4월 27일, 마침내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노예해방령이 포고되었다.

39) PV, p. 98.

40) PV, p. 27. 농촌법전은 1826년 아이티 정부가 농민들을 대농장에 묶어놓기 위해 만든 것으로 쉴세르는 이를 전제주의라고 극력 비판했다.

이때까지 쉴세르는 위원회를 장악하고 식민지 문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혁명이 만들어낸 기회의 순간은 금방 끝이 났다. 임시정부 수뇌부와 급진 공화파 간의 갈등이 불거지던 5월 경 쉴세르는 해군식민부 차관직에서 사임했고, 노예제폐지위원회의 회기를 연장해 달라는 그의 요구 역시 거부당했다. 다음으로 조직된 위원회는 노예소유주들을 위한 보상금위원회(Commission de l'indemnité)였고, 여기서 쉴세르는 자유주의자들과 식민당파의 협공 아래 소외되었다.

IV. 보편적 시민권의 모순

이후 쉴세르 위원회가 입안한 안건들은 실제 적용 단계에서 수많은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쳐 굴절되었다. 결정적으로 공화국이 보수화되고 제정이 들어서면서 1848년의 개혁안들은 노예제폐지 자체를 빼고 거의 다 좌절되었다. 하지만 쉴세르의 보편적 시민권 기획은 식민지의 현실과 만나면서 이미 많은 모순을 배태하고 있었다. 그의 기획안은 이후 앙티유 식민지 정책과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칙상 보편적인 프랑스 시민권은 1789년 당시부터 이미 적용 단계로 오면 극도로 모호한 개념임이 드러났다. 특히 식민지에 ‘프랑스’ 시민권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수한 모순들이 따랐다. 혁명은 시민권을 국민국가 내에서 정의했지만 식민지로 옮겨오면 국적과 시민권이 일치하는 집단은 소수에 불과했다. 지롤레가 지적하듯 해방령은 노예들의 귀화 절차조차 수반하지 않았다.⁴¹⁾ 이들은 속지주의로도 속인주의로도 프랑스인이 아니었다. 한 식민지 대리인은 해방령과 같은 집단 해방은 원래 재산이었던 노예들을 외국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귀화부터 시키고 참정권을 운운하라고 꼬집었다.⁴²⁾ 실제로 해방노예들은 해방령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방된 노예들에게 프랑스

41) Girollet, “La politique coloniale de la IIe République”, pp. 72-74.

42) PV, p. 29.

국적을 부여하던 1833년 법에 의해 국적을 부여받았고, 그조차 명문화되지 않았다.

결정적 문제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더 이상 쉴세르가 생각하던 ‘네 개 구(舊)식민지들(quatre vieilles colonies;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기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1830년부터 프랑스는 알제리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공격적인 식민지 팽창 중이었다. 그러나 혁명 전에도 1848년에도 쉴세르는 새로 획득한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알제리를 관찰하던 전쟁성 관리의 방문을 받고 회기 초반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해방령 초안의 “모든 해방민은 프랑스인이 된다.”는 법안 1조 내용이 알제리의 아랍인 소유주들 하에 있던 노예들에게도 적용될지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이 표현을 없애고 그 문제는 제헌의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식민지 의회 대표권에 대한 6조의 경우에도 “알제리 주민” 대신 “알제리의 프랑스 시민”으로 표현을 바꿔서 원주민을 투표권에서 배제했다.⁴³⁾ 앙티유 주민들과 반대로 알제리의 무슬림 원주민들은 프랑스 국적은 지녔지만 시민권은 부여받지 못했다. 세네갈과 인도양 식민지들의 경우 일부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특별법 하에 주어졌지 공화국의 보편 시민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보편적 시민권은 사실상 네 개 구식민지를 위한 것일 뿐, 알제리, 세네갈, 인도양 식민지들의 경우 ‘원주민체제(indigénat)’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쉴세르식 동화주의는 이때부터 이미 “보편주의 없는 동화주의”였다.⁴⁴⁾ 프랑스 시민권은 사실상 프랑스 시민권, 식민지 시민권, 원주민 시민권으로 나뉘었다. 식민지마다 그 주민들의 범주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졌다. 프랑스인들이 보기에 식민지인들 내에도 인종과 문화에 따라 암묵적인 계서제가 존재했다. 쉴세르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식민지에서 살아온 구식민지의 주민들은 프랑스인이라고 강변했

43) PV, pp. 21-22.

44) Girolet, “La politique coloniale de la IIe République”, p. 79.

다. 세네갈의 일부 원주민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스스로의 관습법을 포기하고 공화국으로 넘어오도록 참정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알제리의 무슬림 원주민이나 인도의 힌두교 원주민들은 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식민지를 해외도로 통합시키려는 쉴세르의 끈질긴 노력 속에서도 알제리는 빠져 있었다. 알제리의 경우 앙티유와 반대로 백인 이주민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본국에 동화를 요구했다. 원주민들은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제리의 프랑스 이주민들은 법적 동화의 후폭풍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위에서 살펴 본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차별화된 시선은 쉴세르식 시민권 개념에 깔린 문화적 가정들을 들춰낸다. 식민지는 막 수립된 공화국에게 ‘공화국 내 시민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심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치적 평등에 대한 믿음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존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프랑스 문화권 내에 있었던 앙티유의 흑인들은 법적 동화의 대상이었던 반면, 새로 얻은 식민지의 원주민들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위르방(Yerri Urban)의 말처럼 프랑스 시민권 내에는 ‘문명화’ 개념이 깔려 있었지만,⁴⁵⁾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했다. 시민권은 문명화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문명화’되었다고 판단된 집단들에만 시민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원주민’은 이후 제국주의의 핵심적 용어가 되었다. ‘원주민’이란 범주는 예전의 ‘검둥이(nègre)’처럼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실상 비문명화된 존재로서 ‘인간’과 ‘시민’의 반대편에 식민지인들을 위치시켰다. 1885년 상원에서는 알제리와 구식민지들 사이의 법적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알제리보다 구식민지들이 더 문명화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발끈한 쉴세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앙티유에는 원주민 집단이 없다.”⁴⁶⁾

쉴세르를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은 심지어 알제리에서도 원주민들보

45) Yerri Urban, “La longue genèse de la citoyenneté dans le second Empire colonial 1798-1898”, *La Révolution française*, no.9(2015).

46) Girolet, Victor Schoelcher, *abolitionniste et républicain*, p. 308.

다 흑인들이 문명화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는 흑인들이 일종의 문화 부재의 상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흑인들을 ‘선한 야만인(Bon Savage)’이나 문화적 백지 상태(tabular rasa)로 보는 계몽주의 이후의 전통이 깔려 있다. 그러나 앙티유에서는 오랫동안 세 개 대륙의 문화가 융합되어 아래로부터 새로운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18세기 후반 경제 호황으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 ‘아프로-캐리비안(Afro-Caribbean) 문화’을 야만의 잔재로만 인식했다.

이러한 문화적 가정들은 해방 후 시민권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고찰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현지 경험이 풍부했던 쉴세르는 노예제를 연상시키는 대농장 체제에 대한 해방노예들의 절대적 반감을 이해했다. 설탕 대농장 체제를 수호하지 않으면 식민지 경제가 붕괴된다고 믿었던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그는 토지 재분배를 통해 해방 노예들을 자영농이나 중소규모 농장주로 육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쉴세르는 노동의 의무와 재산권 존중이 자유와 시민권의 핵심이라는 자유주의의 가치 역시 굳게 믿었다. 심지어 그는 매년 노예해방령이 선포된 날을 노동 축제일로 기념하는 법안까지 제정했다.⁴⁷⁾ 그는 시민권을 제약하는 일체의 자격 요건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신시민들에게 끝없이 이렇게 외쳤다; “노동하시오, 조국의 품에 속하게 된 여러분들!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은 유럽에 있는 동료 시민들의 인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⁴⁸⁾ 그들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노동과 공공질서로 반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결국 노동은 사후적으로 시민권을 정당화

47) PV, pp. 326-327.

48) Schmidt,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 125.

49) 이후 쉴세르의 선거 유세의 주요 내용이 이것이었다. 많은 유세 자료들 중 Schoelcher, *La vérité aux ouvriers et aux cultivateurs de La Martinique*의 16장과 V. Schoelcher et A. F. Perrinon, *Nouvelles observations sur les élections de la Guadeloupe*(Paris: Brière, 1849) 참조.

하는 자격 요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쉴세르의 노동과 재산권 개념은 식민지 특유의 사회경제적 관습과 갈등을 빚었다. 식민지 전문가인 쉴세르는 흑인 노예들이 농장의 오두막, 텃밭, 나무들을 관습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을 해방령에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⁵⁰⁾ 또한 그는 여성 노예들의 농장 노동을 질타했고, 이들이 텃밭에서 경작한 작물을 시장에 내다팔며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경계했다. 그는 여성은 실내 활동에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며, 해방이 되면 “문명화된” 가족 형태 속에서 여성이 “자연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⁵¹⁾ 유랑이나 결식을 하다 잡힌 여성 해방노예는 교정 작업장에서 “그녀의 성에 맞는” 일을 배분받아야 했다.⁵²⁾ 쉴세르는 이러한 관습적 재산권, 여성 노동, 그리고 여성 가장이나 미혼모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 가족 형태 등을 노예제의 유산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아프리카적’ 구습은 해방과 함께 사라지리라 관측했다.

이러한 관습들이 노예제의 유산이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쉴세르가 없애려던 ‘악습들’은 실상 노예들이 노예제 사회의 억압 속에서 조금이나마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일상에서 일구어 낸 저항 문화의 일부였다. 텃밭 경제나 오두막과 나무에 대한 관습적 소유권은 노예들이 농장 노동과 별개로 획득해 낸 사회경제적 자율성의 원천이었다. 여성 노예들은 노예제 바깥에서 발전하던 이러한 대안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안정적 가족 관계가 불가능한 노예제 사회의 상황과 아프리카 문화가 결합되어 식민지에서는 본국과는 다른 대안적 가족, 친족, 공동체 형태들이 발달했다.⁵³⁾ 해방노예들을 이 모든 사회관계에서 떼어내어 보편적 개인-노동자로 만드는 것이 시민권의 기희

50) PV, p. 168.

51) PV, p. 167.

52) PV, p. 325.

53) 이에 대해서는 Dale Tomich, *Through the Prism of Slavery: Labor, Capital, and World Economy*(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4) 참조.

이었다. 그러나 노예제폐지론자들의 생각과 달리 해방노예들은 결코 ‘백지’가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 역시 프랑스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벗어던질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로부터 하나의 순환논리가 만들어졌다. 보편적 시민권과 법적 동화는 사회적 통합의 선결조건이었지만, 이는 문화적 동화주의를 전제했다. 문화적으로 동화가 가능한 집단만이 법적 동화의 대상이 되었고, 이 동화마저도 근면한 노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 자격을 입증해야만 했다. 해방 이전 쉴세르는 권리에 대해 원칙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연권은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노예들은 원래 그 권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해방은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노예해방을 기점으로 쉴세르와 노예제폐지론자들의 견해는 점차 시혜적, 온정주의적인 것으로 바뀌어 해방노예들의 삶을 옥죄었다. 자유는 공화국이 값없이 ‘선물’한 것이므로 이제 노예들은 해방자에 대한 의무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자유, 평등, 우애”라는 공화국의 모토는 식민지에서 금방 “노동, 질서, (노예제 과거에 대한) 망각”으로 바뀌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이후 ‘배은망덕’하거나 (좌파의 경우), ‘열등한 인종의 한계’(우파의 경우)로 단죄될 것이었다. 해방노예들과 식민지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자유’의 내용을 규정할 자유는 부여받지 못했다.

V. 1848년과 해방의 유산

쉴세르가 입안하여 관철시킨 즉각적 노예제 폐지는 이후 식민지의 노예들에 의해 더 급진적으로 시행되었다. 노예해방령이 4월 27일 포고되고 공화국 위원들이 식민지로 가는 배길에 있는 동안 식민지에서는 사태가 급진전되었다. 3월 말 2월혁명의 소식이 전해진 후 식민지에서는 계속 소요가 일었고, 결국 5월 22일 마르티니크에서 대규모

54) 양측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질 망스롱,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우무상 옮김(경북대학출판부, 2013), 126-127쪽.

폭동이 터져 나왔다. 학살당한 생도맹그 백인들의 운명을 떠올린 농장주들이 총독을 압박한 결과, 결국 며칠 간격으로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에서 노예해방령이 선포되었다. 공화국 위원들이 노예해방 법령을 들고 6월 초 식민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노예제는 사실상 폐지된 후였다.⁵⁵⁾ 이로써 위원회가 입안한 두 달 간의 유예 기간은 없던 일이 되었다. 1794년 1차 노예해방에서는 식민지가 기정사실화시킨 것을 본국 의회가 완성했다면, 1848년에는 본국 의회가 입안한 노예해방을 식민지에서 완성시켰다. 따라서 ‘누가 해방자인가?’라는 상투적 질문은 의미가 없다. 해방은 본국과 식민지 간의 교차로 위에서 형성되었다.

이후 쉴세르는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민의회 의원으로 남았다. 그러나 보수화되는 정치 지형에서 그는 계속 지는 싸움을 해야 했다. 결국 제2제정이 들어서면서 살아남은 것은 노예해방뿐 해방노예를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들은 거의 다 폐지되었다. 쉴세르가 꿈꾸었던 소규모 농장주들의 세계 역시 실패했다. 부유한 재산소유주들이 설탕 경제를 장악했고 신시민들은 대부분 농업 노동자가 되었다. 이를 두고 세제르는 평했다.

“그[쉴세르]는 앙티유의 흑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비록 흑인들이 재산과 경제적 안전을 얻도록 하여 그 자유를 완전케 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적어도 구질서를 파열시키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순을 만들어냈다: 즉, 현대 식민지인들을 완전한 시민이자 동시에 전적인 프롤레타리아로 만든 모순을.”⁵⁶⁾

하지만 쉴세르의 기획이 단지 텅 빈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데에 그쳤다면 왜 세제르는 급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계속 1848년 해방을 복기했을까? 20세기에 세제르가 살려낸 “쉴세르의 현재성”은 무엇

55) 이는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데에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주류 서사는 쉴세르를 해방자로 추켜세우고, 저항 서사는 5월 22일 마르티니크 폭동을 찬양한다.

56) Aimé Césaire,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 *Esclavage et colonisation*, p. 28.

보다 노예해방 이후 침묵된 급진적, 혁명적 해방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에 있었다.⁵⁷⁾ 19세기 말까지도 ‘경험 없는 이상주의자’의 성급한 노예해방이 식민지를 망쳤다는 비난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과연 1848년 3-4월을 넘겼다면 노예해방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공화국은 5월부터 이미 보수화되고 있었다. 산적한 국내 안건들 때문에 보상금 문제가 제헌의회로 가기까지만 1년이 걸렸다. 쉴세르는 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즉각 폐지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모두 노예제를 연장시키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노예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혁명적 상황을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노예해방을 단행했다. 세제르가 찬탄한 것은 혁명이 열어 놓은 짧은 순간의 기회를 포착한 쉴세르의 명정한 정치 감각이었다.

동시에 이는 쉴세르가 표방했던 급진 공화주의의 혁명적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공화국이나 공화주의는 기존 체제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정치학자인 아야(Samuel Hayat)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848년 2월에 공화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체제로서의 공화국, 그리고 해방과 인민주권의 기획으로서의 공화국이 그것이다. 공화국의 이름으로 수행된 혁명이 체제로서의 공화국을 부활 시킴으로써 1848년은 중요한 교차점이 되었다.⁵⁸⁾ 이후의 역사에서 공화국이 체제가 되고 노예해방이 제도가 되면서 그 혁명적 급진성은 빛이 바랬다. 쉴세르가 포착했던 혁명적 기회의 공간은 잠시나마 사회의 혁명적 재조직으로서의 노예해방, 그리고 어제의 노예를 시민으로 만드는 급진적 공화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노예해방을 의회의 입법과 식민지 경제의 틀 내에 가두려 했던 당대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쉴세르에게 해방이란 곧 혁명, 즉 사회의 급진적 변혁과 재조직을 의미했다. 이를 두고 세제르는 “빅토르 쉴세르는 노예제폐지론을

57) Aimé Césaire, “Commemoration de centena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Lectoure: Capucin, 2004), p. 71.

58) Samuel Hayat, *Quand la République était révolutionnaire: citoyenneté et représentation en 1848*(Paris: Le Seuil, 2014), pp. 11-12.

넘어서서 혁명가의 대열에 합류했다.”⁵⁹⁾고 평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노예해방과 함께 1848년의 또 다른 영속적인 유산이 된 것은 해방노예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제르가 말했듯이 1848년의 놀라운 점은 “축소된 자유, 조각난 권리”를 단계별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한 번에 부여한 것”이었다.⁶⁰⁾ 자유주의자들은 참정권에 각종 능력주의적 조건(문해력, 결혼, 거주 기간, 귀화)을 붙이고자 했지만 쉴세르는 자유의 능력을 만드는 것은 자유의 실천이라고 주장하며 보통선거권을 밀어붙였다. 이는 법적 동화와 참정권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고 실질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가 추진한 무상 교육과 해방노예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확충은 노예해방을 완성하기 위한 두 축이었다. 세제르의 말처럼 그는 “경제적 안전이 없는 곳에 자유의 기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⁶¹⁾

결정적으로 쉴세르의 기획은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의 전통을 되살려서 공화주의와 접합시킴으로써 이후 프랑스 식민지 정치에서 시민권을 핵심적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점에서 1848년의 유산은 양가적이었다. 시민권의 원칙은 자명했지만 그 구체적 범위나 적용 방식은 모호했고, 이후 그 의미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집단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한편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보편적 시민권은 식민지에 결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실상 새로운 배제를 낳았다. 이론상 시민권은 개인과 공화국의 관계이며, 이 개인들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 시민의 특질(자유, 평등, 합리성, 세속성)은 실상 서구 전통에 기원한 것이었다. 또한 노동 문제에서 보듯이 시민됨은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도덕과 결부된 자격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식

59) Césaire,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 3.

60) Césaire, “Hommage à Victor Schoelcher”,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 p. 58.

61) Césaire, “Hommage à Victor Schoelcher”, p. 66.

민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나 공동체 때문에 시민됨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들은 인종적, 문화적 결합의 소유자로 낙인찍혔다. 이때 시민권은 통합이 아니라 배제의 원리로 작동했다.

그러나 동시에 1848년의 유산은 이후 시민권을 고도로 정치화시켜 식민지인들이 싸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노동운동사나 사회경제사는 식민지의 시민권이나 참정권 운동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연구들은 실상 이후 식민지 노동 운동에서 시민권 개념이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⁶²⁾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로서 다른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이었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권을 통해 식민지인들은 법적 동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국과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즉, 본국에서 시행된 노동이나 복지 정책이 식민지에도 확대되기를, 동시에 노예제나 강제노동처럼 본국에서 불가능한 일을 식민지에서 자행하는 일이 없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두 번에 걸쳐 공화국이 해방노예들에게 (원칙상이나마) 완전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역사는 제3공화정이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이자 압박이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해방노예들의 사회경제적 열망은 서구적 자유 개념에 의해 표현될 수 없었다는 일부 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의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전통과 근대, 서구와 비서구, 보편과 특수라는 오래된 이분법을 재생산한다. 오히려 이후 식민지인들은 1848년의 보편적 수사를 전유하여 실질적 자유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것은 쉴세르의 기획이 ‘선물’한 것이 아니라 쉴세르식 동화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전유한 식민지인들의 몫이었다. 제3공화정기에 쉴세르식 동화주의와 노예제폐지론은 이제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전환된다. 이후 동화의 이상은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결과의 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62) 최근 연구 중 프랑스 식민주의사에서 시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Frederick Cooper, *Citizenship between Empire and Nation: Remaking France and French Africa, 1945-1960* (London: Princeton Univ. Press, 2015) 참조.

1998년 노예해방 150주년 기념식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팡테옹에 있는 쉴세르의 묘에 헌화하며 1848년의 해방이야말로 “프랑스식 통합”이라고 찬양했다.⁶³⁾ 국가적 기념식들은 여전히 프랑스식 동화주의에 내재한 모순과 계속된 실패를 은폐하고 쉴세르를 박제된 국민 영웅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예해방과 연관된 복잡한 역사적 상황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쉴세르라는 ‘해방자’ 개인의 기표 아래 넣어 신화화와 재신화화를 거듭해 온 논의 구조를 해체하는 한편, 식민주의 담론의 일부로 환원시킬 수만은 없는 1848년 해방의 또 다른 면모를 조명하고자 했다. 하나의 종속을 끝냈지만 진정한 해방을 열지는 못한 1848년 혁명은 이후 앙티유인들이 실제적 자유를 향한 투쟁을 거듭하는 동안 끝없이 곱씹게 되는 기억의 표상이 되었다. 세제르의 말처럼 앙티유인들이 이를 통해 “해방이란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걸어갈 길”임을 깨달았다면,⁶⁴⁾ 1848년은 공화국의 시민됨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공주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7. 8. 10, 심사일자: 2017. 8. 16, 게재확정일자: 2017. 8. 16〉

▶ **주제어** : 빅토르 쉴세르(Victor Schoelcher), 2월혁명(Revolution of 1848), 제2공화정(French Second Republic), 노예제폐지론(Abolitionism), 노예해방(Emancipation of slaves), 공화주의(Republicanism), 동화주의(Assimilationism), 시민권(Citizenship)

63) Frederick Cooper, Rebecca Scott and Thomas Holt, *Beyond Slavery: Explorations of Race, Labor, and Citizenship in Postemancipation Societies*(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p. 151-152.

64) 권윤경, 「탈식민화 시대에서 전지구화 시대로」, 223-224쪽. 억압 체제의 법적, 공식적 종식이 자동으로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지는 못함을 빗댄 말이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Abolition de l'esclavage: procès-verbaux, rapports et projets de décret de la commission instituée pour préparer l'acte d'abolition immédiate de l'esclavage(Paris: Imp. Nat., 1848).

Victor Schoelcher et A. F. Perrinon, *Nouvelles observations sur les élections de la Guadeloupe*(Paris: Brière, 1849).

Victor Schoelcher, *De l'esclavage des noirs et de la législation coloniale*(Paris: Paulin, 1833).

_____, *Abolition de l'esclavage: examen critique du préjugé contre la couleur des Africains et des sang-mêlé*(Paris: Pagnerre, 1840).

_____, *Des Colonies françaises: abolition immédiate de l'esclavage* (Paris: Pagnerre, 1842).

_____, *Colonies étrangères et Haïti, résultats de l'émancipation Anglaise*, 2 tomes(Paris: Pagnerre, 1842-45).

_____, *Histoire de l'esclavage pendant les deux dernières années*, 2 tomes(Paris: Pagnerre, 1847).

_____, *La vérité aux ouvriers et cultivateurs de la Martinique suivie des rapports, décrets, arrêtés, projets de lois et d'arrêtés concernant l'abolition immédiate de l'esclavage*(Paris: Pagnerre, 1849).

_____, *Polémique coloniale, 1871-1881*, tome 1(Paris: Dentu, 1882).

_____, *Polémique coloniale, 1882-1885*, tome 2(Paris: Dentu, 1886).

_____, *Esclavage et colonisation*, textes choisis et présentés par Émile Tersen(Paris: PUF, 2007[1948]).

2. 연구 문헌

권윤경,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 개혁론: 이장베르의 정치 경력을 통해 본 프랑스의 노예제폐지론, 1823-1848」, 『프랑스사연구』 28집(2013).

_____, 「탈식민화 시대에서 전지구화 시대로: 에메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과 포스트식민주의적 조건들」, 『서양사론』 127집(2015).

질 망스롱,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우무상 옮김(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Bangou, Henri, *L'actualité du combat et des idées de Victor Schoelcher*(Aurillac: Edition du Centre, 1973).

Blérald, Alain-Philippe, “La problématique démocratique dans le discours abolitionniste de Victor Schoelcher: essai de philosophie politique”,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38, No. 2(1988).

Bongie, Chris, “‘C’est du papier ou de l’Histoire en marche?’: The Revolutionary Compromises of a Martiniquan homme de couleur Cyrille-Charles-Auguste Bissette”, *Nineteenth-Century Contexts*, Vol. 23, No. 4(2002).

Bougenot, Louis, *Victor Schoelcher*(Paris: Editions de la Nouvelle Revue, 1921).

Césaire, Aimé,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Lectoure: Capucin, 2004).

_____, “Victor Schoe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 Tersen (ed.), *Esclavage et colonisation*.

Cooper, Frederick, *Colonialism in Question: Theory, Knowledge, Histo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_____, *Citizenship between Empire and Nation*(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15).

Cooper, Frederick, Holt, Thomas & Scott, Rebecca, *Beyond Slavery: Explorations of Race, Labor, and Citizenship in Postemancipation Societies*(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Dorigny, Marcel, (ed.), *Les abolitions de l’esclavage de L. F. Sonthonax à Schoelcher*(Paris: Éditions UNESCO, 1995).

Dubois, Laurent, “The Road to 1848: Interpreting French Anti-Slavery”, *Slavery and Abolition*, Vol. 22, No. 3(2001).

Girollet, Anne, *Victor Schœlcher, abolitionniste et républicain: approche juridique et politique de l’œuvre d’un fondateur de la république*(Paris: Karthala, 2000).

_____, “L’abolitionnisme de Victor Schoelcher, un humanisme mâtiné de colonialisme et de moralisme”, *Cahiers d’histoire*, Vol. 44, No. 3(1999).

_____, “La politique coloniale de la IIe République: un assimilationnisme modéré”,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Vol. 85(1998).

- Girollet, Anne, “Les quatre vieilles colonies: la dialectique de l’assimilation et du principe de la départementalisation chez Victor Schœlcher”, Marcel Dorigny (dir.), *Esclavage, résistances et abolitions*(Paris: CTHS, 1999).
- Hayat, Samuel, *Quand la République était révolutionnaire: citoyenneté et représentation en 1848*(Paris: Seuil, 2014).
- Jennings, Lawrence, *French Antislavery: the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in France, 1802-1848*(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Lara, Oruno, *Suffrage universel et colonisation*(Paris: L’Harmattan, 2015).
- Martin, Virginie, “La citoyenneté revisitée: bilans et perspectives historiographiques”,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9(2015).
- Nesbitt, Nick, “Victor Schoelcher, Tocqueville,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Caribbean Critique: Antillean Critical Theory from Toussaint to Glissant*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3).
- Rouquette, Jules, *Les Défenseurs de la République, Victor Schoelcher*(Paris: Collombon et Brûlé, 1877).
- Sainville, Léonard, *Victor Schoelcher, 1804-1893*(Paris: Fasquelle, 1950).
- Satineau, Maurice, *Schoelcher, héros de l’abolition de l’esclavage dans les possessions françaises*(Paris: Mellottée, 1948).
- Schmidt, Nelly, *Abolitionnistes de l’esclavage et réformateurs des colonies, 1820-1851: analyse et documents*(Paris: Karthala, 2000).
- _____, “1848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des Caraïbes: ambitions républicaines et ordre colonial”,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Vol. 85(1998).
- _____, *Victor Schoelcher en son temps*(Paris: Editions Maisonneuve et Larose, 1998).
- _____, *Victor Schœlcher et l’abolition de l’esclavage*(Paris: Fayard, 1994).
- Titi, Téléphore, *Victor Schoelcher 1804-1893: le philanthrope, le patriote, l’homme politique*(Paris: Impr. des Ouvriers Sourds-Muets, 1904).
- Tomich, Dale, “Thinking the “Unthinkable”: Victor Schoelcher and Haiti”, *Review*(Fernand Braudel Center), Vol. 31, No. 3(2008).
- _____, *Through the Prism of Slavery: Labor, Capital, and World Econom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4).
- Urban, Yerri, “La longue genèse de la citoyenneté dans le second Empire colonial

1798-1898”, *La Révolution française*, Vol. 9(2015).

Wilder, Gary, “Untimely Vision: Aimé Césaire, Decolonization, Utopia”, *Public Culture*, Vol. 21, No. 1(2009).

〈Résumé〉

Émancipation et citoyenneté: la révolution de 1848 et l'assimilationnisme républicain de Victor Schoelcher

Yun Kyoung KWON

Pour Victor Schoelcher, la proclamation de l'émancipation en 1848 a marqué un point culminant dans la longue carrière politique du «Libérateur». La proclamation de 1848 était très radicale en ce qu'elle abolit immédiatement l'esclavage colonial sans aucun terme intermédiaire et accordait la pleine citoyenneté et les droits politiques aux affranchis. Son projet pour l'intégration des colonies à la République française a fondé l'assimilationnisme colonial. En se concentrant sur les théories et pratiques de la citoyenneté universelle enchâssée dans l'émancipation de 1848, cet article examine à la fois les paradoxes et les possibilités de l'assimilationnisme républicain de Schoelcher, par là, en éclairant les legs compliqués de 1848.

〈Abstract〉

Emancipation and Citizenship: the Revolution of 1848 and Victor Schoelcher's Republican Assimilationism

Yun Kyoung KWON

For Victor Schoelcher, the proclamation of emancipation in 1848 marked a pinnacle in the long political career of "the Liberator." The 1848 proclamation was very radical in that it immediately abolished colonial slavery without any intermediary term, and bestowed full citizenship and political rights on the freed people. His project of making the colonies an integral part of the French Republic founded colonial assimilationism. Focusing on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universal citizenship enshrined in the 1848 emancipation, this article examines both paradoxes and possibilities of Schoelcher's republican assimilationism, thereby illuminating the complicated legacies of 1848.